

공 고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-615호

서초한양아파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1.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반포1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4월 12일

서 초 구 청 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정비사업의 명칭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5호 외 2필지
- 2) 정비구역의 면적 : 38,594.4㎡

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안기성)
- 2)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 6층 (반포동, 대영빌딩)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
해당없음

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1) 대지면적 : 38,583.16㎡, 건폐율 : 17.00%, 용적률 : 284.50%, 최고높이 : 104.4m

2) 지하2층/지상34층, 아파트(11개동, 829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

※ 주요 변경사항 : 지하층 면적 증가, 서초중앙로변 방음벽 미설치 등

사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비치된 도서 참조

아. 공람 및 열람 장소 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45), 반포1동 주민센터

자. 공람기간 : 2018. 4.12. ~ 2018. 4.26.